##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2 발의연월일: 2020. 11. 11.

발 의 자:이주환·김기현·박덕흠

양금희 • 이철규 • 임이자

전봉민 · 정동만 · 태영호

한무경 • 황보승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수단의 체계로 편입시키면서 최고 운행속도와 차체중량에 대하여 정하고 그 외 안전요건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둘러싼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위한 것임.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여도 전동기가 작동하고 차체중량이 30kg이상으로 불법 개조된 장치를 운행하더라도 현행법에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승자 인원 초과의경우에도 관련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며,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제153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156조제1호 등).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운행가능한 최고속도나 차체중량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0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것을 알면서 이를 운 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

제156조제1호 중 "제7항까지"를 "제7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⑩ (생 략)	① ~ ⑩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는 운행가능한 최고속도나 차				
	체중량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보다 높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인				
	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u>아니된다.</u>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제153조(벌칙)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제50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				
	인형 이동장치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것				
	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 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 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 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 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 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 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 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 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 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 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

1.	 	 	 	 

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 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u>제7항까지</u>, 제51조, 제53조제 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 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제7항까지 및 제10항--2. ~ 12. (현행과 같음)

2. ~ 12. (생 략)